

Monthly Tax Newsletter

January 2022

최신 주요 예규판례

Issue 91

삼성KPMG 세무본부 TKC



목차

소득법인세 분야

03

- [판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판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을 별도의 과세기간에 적용될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 [심판례]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 [심판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결손금 소급공제시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납세자) 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예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 [예규]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예규]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범위
- [예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예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재산소비세 분야

13

- [판례]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국승)
- [판례] 가공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판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부납세자승)

목차

- [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심판례]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 시, 최대주주 등 주식 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 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예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 [예규]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 [예규]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무체재산권 평가 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지방세 분야

20

- [판례]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공동경영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 50%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 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 (10%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
- [심판례] 쟁점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율 적용 시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 취득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미분양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관세분야

26

- [심판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프레스용 주물제품("쟁점물품")을 HS 7325호(기타의 주물제품, FCN 0%)로 분류할 지, HS 8466(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부분품, 2016 FCN 6.4%, 2017 FCN 5.6%)으로 분류할지 여부 (기각)

최신 주요 예규판례

소득법인세 분야

[판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0581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주택건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을 누락하였음. 피고는 위 대금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5. 3.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09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로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주택건축판매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7. '부외경비의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자와 위약금 등 경비("이 사건 부외경비")의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2018. 10. 10. 및 2018. 12. 1. 원고에게 해당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외경비 중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판단]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서 다루어졌던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한 것에 해당하고 위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닌 이상,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 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판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을 별도의 과세기간에 적용될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7066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2012. 8. 13. 이 사건 종전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이 사건 종전수입")을 신고한 후 2013. 6. 30. 폐업하였고, 2013. 3. 18. 주택건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을 얻은 후 2013. 11. 8. 폐업하였는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2012년) 수입금액인 이 사건 종전수입이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2018. 10. 1.부터 2018.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 영위하여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인 2013. 6. 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상태이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에 관한 것이 아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단순 경비율 적용여부의 판단을 위한 것인 바, 세무공무원은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2012년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종전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례]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9963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 5. 29.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사건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우리나라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및 단말기유통거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상 용인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 중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초과하는 이 사건 지원금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례]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1서2316, 2021. 11. 24.

[사안]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출연료 수익을 50 대 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수익분배금을 계약과 상이하게 지급하고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 처분청은 각 연도 별 법인의 손금 또는 대표이사의 총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2016년에 계상한 수익분배액 중 일부를 2014년에 인식할 수 익분배액(“쟁점금액”)이라고 보아 2016사업연도 손금인식액을 손금부인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의 손금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총수입금액에는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 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보아 2014사업연 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는 세법상 그 손금의 귀속시기가 2014사업연도로 보이며, 처분 청은 쟁점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증액경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 법인이 쟁점금액 등을 2015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 인하면서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결과가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 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판례]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서1813, 2021. 12. 29.

[사안] 처분청은 2018.4.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을 부인하고 다른 항 목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환급(감액경정 처분)한다는 통지를 함. 청구법인은 2020.10.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 의 부인에 따라 증액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판단] 처분청의 증액과 감액의 동시 경정으로 전체로서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증액 부분(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액)이 있었음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을 당시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이 된 증액부분만을 경정처분 하였다면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항을 직권으로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부분까지 90일이 아닌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한 조세분쟁의 해결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의 실제내용은 처분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부인의 취소이므로 이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관련한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인 90일과 유사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부인액과 관련한 경정청구기간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부인되어 증액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례]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 자산 매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0중8188, 2021. 12. 28.

[사안] 청구법인은 중국에 해외현지법인 A사를 설립하여 A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A사는 공급받은 자재에 추가 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한 제품을 청구법인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유상사급 방식으로 온도제어 수정진동자(Temperatur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이하 “TCXO”), 관통콘덴서, 광마우스를 A사에게 생산하게 하고 이를 수입하면서 TCXO 불량품(“쟁점불량품”)을 수입(“쟁점거래”)한 후 폐기한 것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국조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라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바, 쟁점불량품 폐기시 발생하는 수익이 구입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따라서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예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수익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TCXO는 유상사급거래(재매입거래)의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생산자인 A가 불량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기업보고서 등에서도 무상사급과 달리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재고위험이 제한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유상사급으로 공급받는 관통콘덴서 및 광마우스의 불량품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면서도 TCXO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국조법 적용의 예외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임(국조법 제4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며,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무수익자산의 매입을 공정한 대법원 판례는 2개분임: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의 매입에 관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과 행사기간의 소급 연장 후 풋백옵션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매입에 관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 위 재결(조심 2020중8188)에서는 쟁점불량품의 매입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쟁점 불량품의 매입금액을 금전대여로 의제하여 그 매입 시부터 폐기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임.

[심판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조심 2021부2384, 2021. 12. 13.

[사안] 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외 9개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추징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추징보전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추징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이후 추징되어 환수되었더라도 이미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판단]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서1871, 2021. 12. 3.

[사안] 청구인은 1986년에 (주)A의 계열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한 후 2014년 12월에 퇴직한 임원으로 (주)A와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 이후 1년간 (주)A로부터 매월 000원씩 총 000원(“쟁점소득”)을 2015년에 지급받았음. (주)A는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해당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증액한 후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청구인은 (주)A에서 장기간 경영관리·재경부문·해외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관리팀장, 재경담당 임원, 해외프로젝트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주)A는 종전에 퇴직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문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위로금 상당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약에서 (주)A 대표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담내용과 기간, 상담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부3662, 2021. 12. 21.

[사안] 사회복지법인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2010. 2. 9. 취임 후 2019. 7. 25. 사임하였고, 2020. 9. 24. 사망하였음) (“피상속인”)는 2016. 4. 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에게 000원(“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는데, 2019. 6. 1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음. 조사청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타소득에 가산한 후 2021. 3. 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쟁점소득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 건의 경우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통상적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쟁점금액과 쟁점소득은 비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시기상 단절은 있더라도 약정의 원인이 된 그 소득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임.

[심판례] 쟁점결손금 소급공제시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납세자) 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소5870, 2022. 1. 3.

[사안] 청구인은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각각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데, 2021. 6. 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사업장의 결손금과 제2사업장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쟁점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쟁점신청 세액 중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결손금액이 존재하는 제1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발생한 제2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결정함.

[판단]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제도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기업의 자본총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있고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사업장별로 공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40호의 4서식(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을 보면, 계산 구조가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대상세액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 등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 세액 중 제1사업장 관련 세액 부분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예규]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 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위 예규는 전량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로서 사실상 주주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주식 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법인2017-666, 2018. 3. 16.).

[예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예규]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2021. 12. 14.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계상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상 양도손익이연자산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제4호), 우선매수권의 양도손익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시점이 아닌,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임.

[예규]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2021. 12. 14.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예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2021. 12. 16.

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6711, 2021. 12. 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TKC 코멘트

- 조특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구매대금이라 함은 조특법 제7조의2(기업의 어려움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7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보는 것임(조특법 기본통칙 7의2-0...2; 서면2팀-1078, 2004. 5. 24. 등).

[예규]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2021. 11.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TKC 코멘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해외지주회사”)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국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사안] 원고는 2014. 4. 4. 경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 6. 30. 피고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이 사건 예정신고"), 피고는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15. 5. 6.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이 사건 확정신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과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 사건 경정청구"),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종래에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가 2010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예정신고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은 제111조 제3항 등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나 예정신고한 세액을 증액경정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정신고나 예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

[판례] 가공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사안] 원고는 소외 1과 상표권 사용계약(2004년~2013년), A사와 경영자문 용역계약(2007년~2013년), 소외 2와 고문위촉계약(2011년~2013년)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를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가 모두 실제 용역 등의 공급없이 지급된 가공의 비용이라 보고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4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포함)와 2004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세(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나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소외 1 등이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환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사용료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TKC 코멘트

-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달리,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가공 비용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긍정하였음.

[판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사안]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원고는 2013. 2. 6.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 6. 3.과 2013. 6. 14. 원고들에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판단]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들은 2013. 2. 6. 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TKC 코멘트

- 대법원은, (i)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2013. 2. 6. 이전에 원고들이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였으나, (ii)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iii) 2013. 2. 6.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2013. 2. 6. 이후에는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013. 2. 6. 이전	2013. 2. 7. 이후
원심	적법	적법	위법	적법
대법	적법	위법	위법	위법

[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762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 1은 A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 2는 A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친인척이며, A사는 2014. 3. 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들이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수한 후, 2015. 12. 31.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사의 신주를 취득하였음.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사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분여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이 발생한 거래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전환 등 거래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그 행사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부수적·파생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다른 주주들과 그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심판례]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부4751, 2021. 12. 27.

[사안] 청구법인은 2019. 1. 23.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9. 8. 12. 회생계획(“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은 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1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2019. 8. 13.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보통주로 출자 전환하였고, 같은 날 위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200:1로 병합(병합 후 남은 주식을 “이 사건 잔존주식”)이 이루어졌음.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사건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이 사건 잔존주식 액면가액의 차액(“쟁점차액부분”) 등에 대해 2019. 8. 13.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년 제2기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았음.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차감하여 해당 부가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개정시행령”)의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적용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손세액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 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일부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는 소각된 주식에 대응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점채액부분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TKC 코멘트

- 개정시행령은 대손세액의 공제 사유의 하나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새로이 열거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개정이유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 2. 16. 등)를 법령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음. 결국, 위 재결은 개정시행령의 성격을 확인적 규정으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예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 시, 최대주주 등 주식 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 12. 15.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TKC 코멘트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위 기재부 예규와 반대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

-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7서5083, 2018. 2. 1.).
- 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비중소기업인 상장법인임)의 주식을 갑의 자녀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A법인의 근로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 제1호에 따라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5, 2017. 6. 30.).

[예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한지 등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2021. 8.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 받은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속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외의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 쟁점수용가액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2019인3621, 2020. 12. 7.).

[예규]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5221, 2021. 12. 1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예규]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2021. 1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0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예규] 무체재산권 평가 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2021. 12.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최신 주요 예규판례

지방세 분야

[판례]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1. 12. 25. 선고 2021두42863 판결

[사안] 원고는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다시 기화하여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 3. 8. 피고 관내를 포함한 토지에 가스공급관리시설(이 사건 부속설비)를 신축하고, 피고 관내에 가스관(산업단지 내 매설분 포함)을 매설하여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명지국가산업단지 내에 매설된 가스관 부분과 이 사건 부속설비(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 및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단계, 조성이 완료된 단계, 조성 이후의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조항인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의 경감 대상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이거나 지원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추정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이 사건 가스시설을 가스공급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이 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심판례]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공동경영자인 다른 주주로 부터 추가로 주식 50%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 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지1116, 2021. 12. 2.

[사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배우자(청구인과 함께 “청구인 등”)와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A 등(개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등은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비율 100%)가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0. 1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처분청의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함.

[판단] 청구인은 A 등과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공동으로 경영을 하던 경영지배관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 등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내부 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인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외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 주식 거래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 등과 A 등은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과외의 관계에서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법인과외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주주인 A 등을 청구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지2677, 2021. 12. 13.

[사안] 청구법인은 2019. 11. 28. 건물(아파트 432세대 및 오피스텔 427세대, 상가81호실, 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에 따라 이를 녹색건축인증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3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9. 12. 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규정”)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 「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녹색인증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규정의 경우,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8. 12. 31. 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TKC 코멘트

- 위 재결은 쟁점 감면규정(취득세의 100분의 10 감면)이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아니한 사안임. 이와 달리, 조세심판원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이 인하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된 산업단지 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의 경우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0지0730, 2021. 7. 5.).

[심판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 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지3562, 2021. 12. 16.

[사안] 주식회사 A(“피합병법인”)는 2017. 9.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청구법인은 2018. 12. 1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함. 청구법인은 2019. 1. 28.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이전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피합병법인은 청구법인에 합병되면서 해산등기가 이루어지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와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TKC 코멘트

- 2018. 12. 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은 적격합병 등을 정당한 사유로 신설하였음(제3호 및 제4호).

[심판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

조심 2021지2726, 2021. 12. 27.

[사안] 청구법인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용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본금 납입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

[판단]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도시 중과 예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 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의 조항에서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된 업종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으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첨단기술산업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만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위 재결 사안과 달리,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즉,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전기통신역무는 보편적 역무,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 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이라면 부가통신사업에 포함됨(도 세정과-378, 2008. 4. 7.).

[심판례] 쟁점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율 적용 시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 취득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지2420, 2021. 12. 29.

[사안] 청구인은 2021. 4. 2. 직계존속인 부(父)와 잔금 지급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같음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유상 취득세율, 이하 “1%”)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2021. 4. 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증여 종과세율(무상취득세율: 12%, 이하 “쟁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2021. 4. 28.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 취득세율인 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및 제4호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각 목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여야 하는 바,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가목)이거나, 취득자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목)이거나, 증여세를 신고하여 그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지급한 경우(다목)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목)여야 함.

청구인은 2021년 이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이후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을 보더라도 매월 000원의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자인 청구인의 그 외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나 청구인이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예규] 미분양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48, 2021. 11. 4.

주택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3자 분양을 위한 입찰공고 등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된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초 분양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위 예규와 달리, 과세당국은 건축주가 주택을 완공하기 전 분양광고 등 분양 절차 없이 특정 매수자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지방세특례제도과-1161, 2021. 5. 21.).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5항은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함.

관세 분야

[심판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21관0050, 2021.12.27.

[사안] 청구법인은 2018. 5. 23.부터 2019. 7. 9.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VIDEO PROCESSOR등(LED 전광판 제어기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8517.62-3520호(WTO 양허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 7.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0. 5. 27.자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543.70-9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하므로 2020. 8. 13.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처분청이 경정할 때 적용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급발급된 일부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후 유효기간 예외적용을 근거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선적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의 목적 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기 어려운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보면 발급기한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사후적용이 불가능함.

TKC 코멘트

- 본 사안은 국내의 FTA 특례법과 개별 FTA 협정문이 상충되는 경우 FTA 협정을 우선 적용한 케이스이므로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자가 각 개별 FTA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한중 FTA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제4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라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한중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또한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품목분류에 따라 새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한데 한중 FTA 규정상 선적일로부터 1년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각 개별 FTA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받고자 하는 FTA 협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심판례] 프레스용 주물제품("쟁점물품")을 HS 7325호(기타의 주물제품, FCN 0%)로 분류할 지, HS 8466(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부분품, 2016 FCN 6.4%, 2017 FCN 5.6%)으로 분류할지 여부 (기각)

조심2021관0067, 2021.12.29.

[사안] 청구법인은 2016. 1. 4.부터 2017. 10. 12.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프레스용 주물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제7325.99-2000호[기타의 주물제품, FCN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 8. 18. 자율점검 안내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 1. 25. 원산지 서면조사를 개시함. 청구법인은 2018. 4. 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8. 9. 1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제8466.94-0000호(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부분품, 2016년 FCN6.4%, 2017년 FCN 5.6%) 등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음. 2020. 2. 24.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제기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처분청이 거부하고 경정 고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물품은 반가공품 해당여부가 쟁점임.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태와 추가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비슷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당초의 수입 목적대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 8466.94-0000호 등으로 품목분류한 것은 타당함.

TKC 코멘트

- 본 사안은 FTA 자율점검을 통해 품목분류 이슈가 제기된 건임.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혜세율을 부여하는 수입 관세당국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출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와 달라 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가 자국 또는 자사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부여하고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별다른 검토 없이 해당 HS CODE를 기준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수출국에서는 해당 HS CODE 기준으로 FTA 협정상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나, 수입국에서의 품목분류가 달라질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특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입국 기준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충족여부 사전점검이 필수적임.

- 이 건은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세번으로 FTA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 차이만큼을 추징한 것이며, 수입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임. 관세율표상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반가공품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함. 또한 제7325호 해설에 따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물품의 경우 완성품과 형태가 비슷하고 국내에서 보링머신으로 외각가공 및 고정비용 출가공을 하고, 상하로 슬라이드 가이드를 체결하여 직각가공정도 만을 수행하므로 수입관세당국은 반가공품 자체에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완제품과 동일한 품목분류인 제8466호에 분류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감사합니다.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